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 함(안 제4조제2항)
-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·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명확히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
-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하도록 함

(안 제5조제3항 신설)

- 구 홈페이지, 보건소, 동 주민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기존 약국, 보건소에서 약국, 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.
 -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에게 확대된 수거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·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의무를 규정함.
 -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금천구청 홈페이지,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 홍보하도록 규정함.
- 「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,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한 종류임.

-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은 2022년까지는 서울시 약사회에서 수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, 낮은 수거율과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주민센터, 보건소 등으로 변경하였음.
-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24년 9월 30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로 이관하였음.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폐의약품 수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